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(신종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-97

발의년월일 : 2018. 10.

발 의 자 : 신종갑, 김진천, 김영미, 정혜경, 권영숙, 서종수, 장덕준, 채우진, 최은하, 한일용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(안 제3조 ~ 제8조)

다.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등의 징수(안 제9조)

라.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(안 제10조 ~ 제12조)

마.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예산조치 : 필요

5. 기타사항 :

가. 입법예고 : 필요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2. "청소년복지"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
3. "보호자"란 친권자,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"위기청소년"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

제3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지원
2. 상담·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3. 상담 자원봉사자와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
4.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5. 청소년 폭력·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 지원, 일시 보호 지원
6.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(自活) 및 재활(再活) 지원
7.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위탁 및 운영비의 지원)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경우에 예산·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6조(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
2.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
3. 관련법규 위반, 회계 부정,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5.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
6.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제7조(지도 · 감독의 의무)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도·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조직 및 직원)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,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, 그 밖에 보수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.

③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,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이용료 등의 징수) ① 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위기청소년
2.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,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이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.

제10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)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포구, 공공기관,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"통합지원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

제11조(운영위원회) ① 구청장은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) 센터의 직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,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검사 이용료 상한

(제9조 제4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내 용	이용료
상 담 (1회 기준)	개인상담(청소년)	6,000
	개인상담(부모)	12,000
	개인상담(청소년 및 부모)	12,000
	미술상담	42,000
심리검사 (1회 기준)	성격유형검사 (MBTI, MMTIC)	12,000
	진로검사(HOLLAND)	12,000
	다차원 및 다요인 인성검사	12,000
	다면적 인성검사 (MMPI, MMPI-A)	18,000
	문장완성검사(SCT)	6,000

※ 이용료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부과·징수